

	<h2 style="margin: 0;">임상실습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4-14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5	관리 부서	산학 협력처

제1조(임상실습) ① 임상실습은 임상실습협약을 한 교외 실습과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임상실습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기준에 근거하여 이수하며, 해당학생이 해외 연수 시에는 실습학점을 교내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2. 실습교과목 학점 당 시간 산정 기준은 임상실습 1:3, 시뮬레이션 실습은 1:2로 운영한다.
- ② 임상실습 지도시수는 「교원복무 규정 제15조」 근거하여 실제 지도시간을 인정하고 세부적인 지도시수는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의한다.
- ③ 이외의 모든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제2조(실습목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임상 및 현장실습교육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적인 임상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모든 간호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성과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기른다.
3.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과 건강사업 발전에 필요한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다른 건강관리요원과 협력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능력을 기른다.
5. 모든 간호 대상자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른다.
6. 사회변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기른다.

제3조(실습 과목 및 학점) 실습과목은 과목당 2주 단위로 구성되며, 2주 단위 실습교육 후 학점은 집중이수가 가능하다. 실습과목 및 실습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간호학 실습Ⅰ 2학점
2. 성인간호학 실습Ⅱ 2학점
3. 성인간호학 실습Ⅲ 2학점
4.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2학점
5. 아동간호학 실습 2학점
6. 모아선택 실습 2학점
7. 정신간호학 실습Ⅰ 2학점
8. 정신간호학 실습Ⅱ 2학점
9. 지역사회간호학 실습Ⅰ 2학점
10. 지역사회간호학 실습Ⅱ 2학점

	<h2 style="margin: 0;">임상실습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4-14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5	관리 부서	산학 협력처

- 11. 간호관리학 실습 2학점
- 12. Sim 실습 2학점

제4조(실습기간) 임상실습은 3학년 12주, 4학년 12주로 총 24주 기간 실시하며, 집중수업으로 운영하되 2주 간격으로 이론 강의와 교차 운영한다.

제5조(복장) 실습생은 본 대학과 기관에서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출결)**
- ① 실습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결석 시는 사전에 임상지도교수에게 알리고 3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도교수가 인정한 결석일 경우 총 실습시간 수의 1/4이내까지 인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충실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출석인정은 「성적관리 규정」에 의한다.

- 제7조(임상실습 안전관리)**
- ① 실습 전 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② 실습 전 기본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 ③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진단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매 실습학기 시작 3주 전에 제출하고, 추가 요청이 있을 시 지도교수를 통해 산학협력처에 제출한다.
 - ④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상해, 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학생 인권보호)**
- 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②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 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으로부터 보호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술기의 경우 학생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고 간호술기모형으로 대체하여 실습한다.
 - ④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h2 style="margin: 0;">임상실습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4-14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3/5	관리 부서	산학 협력처

제9조(응급실습 운영) ① 임상실습 운영 중 다음과 같은 응급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습 운영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실습기관의 폐쇄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

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실습이 중단된 경우

다. 기타 국가적 비상사태 및 실습 시 학생 안전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

② 응급실습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실습평가) 실습평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실습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한다.

항 목	비율(%)	비 고
출 결	20	1회 결석 : 2점 감점, 지각과 조퇴 : 1점 감점
실습지도교수	50	보고서, 지침서, 집담회, 용어시험, 실습태도 등
임상현장지도자	30	실습평가지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 style="margin: 0;">임상실습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4-14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4/5	관리 부서	산학 협력처

부 칙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h2>임상실습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4-14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5/5	관리 부서	산학 협력처

부 칙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